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교육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중대재해담당

CONTENTS

- 01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 02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 03 중대산업재해 사례 및 발생 시 대응방안
- 04 주요내용 Q&A

01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업, 기준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반전보건관에제계를 갖추고 근로자인 안전만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들을 어려해야 해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

법제정 목적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투자를 확대 하고 안전 및 보건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

처벌규정의 목적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위한 수단으로서 처벌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심을 갖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 산업안전보건의 질을 높이라는 메시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



경영자의 현장 관리 감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안전, 보건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 관리상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 보건조치

기계, 설비, 위험물질 등에 대한 안전조치

원재료, 가스, 위험작업 등에 대한 보건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보건 확보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보건조치의무

산업재해 예방 달성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이무를 부가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이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삼자가 2명 이상 발생
-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급성중독,독성간염,혈액전파성질병,산소결핍증,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



- 삼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 : 50억 이상의 공사

[만, 개인사업자나 삼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 은 2024 1, 27, 부터 적용됨



-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개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stackrel{>}{\sim}$ 안전, 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중암행점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잠
 결영책임자: 교육감(공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사립학교)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



✓ 근로자 □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전체 교직원 약 14만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기관 및 대상

□ 적용기관 및 대상

Q적용기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학교 P022.3.1.2년인

78	기관			학교				20		
구분	본청 (남부북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유	杢	ē	2	号中	각종	계
기관수	2	25	28	144	1,341	569	350	14	2	2,475

O적용대상: 교원,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등 (2021.4 1기준)

구분	교(원)장	교(원)감	교사	기간제교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계
현원	2,343	2,513	75,364	13,634	13/60	37,357	144,641

🗶 뭐 표에 명시되지 않은 직종은 정(현)원 관리 미대상

-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내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자]
-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 제공자

경영책임자의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벌제4조)

-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기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점 등을 명한 사랑의 이행
 -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경영책임자의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발제4조)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
 - 기업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 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 핵심 point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냅니다.
 - □ 학교현장의 재해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기초로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합니다.
- 발굴된 유해, 위험요인은 안전, 보건조치를 확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예산을 투입하고 모니타임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이무 📴 降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방법

- 1. 안전, 보건 목표와 겸염방침이 설적
- 2.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3. 유해, 위험요인 확인 후 업무절차 개선
-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
- 5. 안전보건된다[책임자, 관리] (독자 등이 업무수행 지원
- 6. 산업안전보건법에 [[[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7. 좀사자 이견 첨취 후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햄
-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 9.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경영책임자의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발제4조)



) 재<mark>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행에 관한 조치</mark>

학교에서 발생한 재해인 원인을 파악해 유해, 위험요인의 제거, 대체 및 통제방안을 ✔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 이행합니다.

중암행정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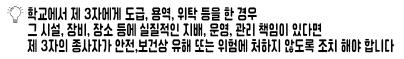
중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 보건삼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53조에 따른 사용중지 등 시점조치



<u>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u>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과 유해, 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도급,용역,위탁 등 🍨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발제6조) ﴿

처벌 대상 및 내용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02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구분	의무이학	의무이행 내용			
	TE	본청	각급 학교			
1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시행령 제4조제1호)	•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2	전담조직 설치 (시행령 제4조제2호)	•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중대재해담당)	-			
3	유해위험요인 개선 (시행령 제4조제3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권설팅 전문기관에 의로). 점검개선절차 마련, 이행상황 점검	•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 학교 자체적으로실시(정기, 수시) - 안번소진반체기육업외표(등하수) - 안번보건반리지율업대(등하는시)			
4	예산편성 (시행령 제4조제4호)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구입비 편성집행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위한예산 편성집행			





학교에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집행 (예시)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
ㅁ 떨어짐 - 수직 사다리 추락위험	보호구안전대.안전도.안전대구입비용 추릭방지시설 설치비용 사다리 안전소치비용
ロ 넘어짐 - 트렌치 덮개 탈락 - 계단, 통로 등 미끄럼방지 미조치 등	미끄러운 바닥 재질 교체 비용 파손된 벽 바닥 타일 보수 비용 경사로, 바닥 등 개선 비용
ㅁ 건축물 붕괴	건축물 안전진단 비용 및 진단에 따른 보수비용
 고 화재 폭발 가스 설비 누출 안전점검 미실시 화학물질 보관장소 관리 부적절 	가스 설비 안전점검 및 유지비용 화학물질 물질 보관 장소 안전조치 비용
□ 근골격계질환 부담 - 배식대 높이 간격 불량	배식대 높이 조절대 구입비용 휴게실 설치비용
ㅁ 환기시설 불량	환기설비 적정여부 컨설팅 및 설비개선 비용
ㅁ 감전	천장, 벽체 누수에 의한 감전조치 비용 보호구(안전모, 절연장화, 절연장갑 등) 구입비용

중대산업재해 예방 축요 업무



	구분	의무이학	행 내용
	TE	본청	각급 학교
(\$)	관리자 평가 (시행령 제4조제5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관리	관리 감독자 업무수행 평가 실시 업무수행평가표 추후 안내(4월 예정)
6	전문인력 배치 (시행령 제4조제6호)	• 중대재해담당 (안전관리자:명 보건관리자:1명) • 산업안전보건담당 (안전관리자:명보건관리자:명노무사:1명) • 학교급식협력과(보건관리자:1명)	-
7	의견청취 (시행령 제4조제7호)	• 홈페이지 배너 신설 후 의견수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등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건의함, 주기적인 회의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관리감독자 업무

관리감독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5조	예시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예초기 금속절단기 분쇄기 실험실습장비 등 장비점검 등 조치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실험실습 안면보호구, 안전장화,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점 검 및 착용에 관한 교육 및 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중지 및 119신고 등 환자보호조치, 산업재해조사 표 작성 보고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작업장 정리정돈 및 상시 안전한 통로 확보 조치 등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 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학교 순회점검 시 지도, 조언에 대한 부분 즉시 개선 조치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 치 시행에 참여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 실시		



구분		의무이형	의무이행 내용			
	TE	본청	각급 학교			
8	매뉴얼 마련 (시행령 제4조제8호)	• 중대산업재해 매뉴얼 마련·이행(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 이행			
9	도급, 용역 위탁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시행령 제4조제9호)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평가- 관리(점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평가관리(BTL학교시설포함) - 도급, 용역, 위탁 관련 안전보건협의체 설지·운영 - 공사용역인보건점점표 - 주역재해예상점점표 -			
	안전보건 관계법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점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종사자 안전보건 의무이행			
10	한 산모선 현세급당 의무이행 조치 (시행령 제5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실사관리(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외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종사자 교육 실시 및 이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평가-관리(BTL학교시설포함)

도급, 용역, 위탁 등 고려사항		
ㅁ 적격업체 선정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관련 능력을 평가 또는 고려하여 업체 선정	
ㅁ 경쟁 입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의 입찰제한 등 국가계약법 및 계약 예규 등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을 준수하 여 입찰 추진	
ㅁ 수의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도 업무수행능력 뿐만 아니라 산재예방 조치 능력 고려 - 계약 시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건' 명시 안전관리비 용 반영하여 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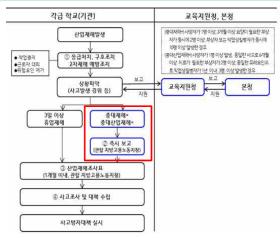
도급, 용역, 위탁 관련 안전, 보건 조치

도급, 용역, 위탁 관련 안전, 보건조치				
ㅁ 안전보건 협의체 설치 운영	- 도급, 용역, 위탁 관련 학교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 (도급인 : 학교/기관)장, 행정실장 교직원 등) (수급인 : 대표자, 종사자(근로자 등) - 내용 :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사항 - 이행사항 · 업체 : 안전, 보건 의무 이행 · 학교/기관) : 현장점검, 감독			

03 중대산업재해 사례 및 발생 시 대응방안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 흐름도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 흐름도

	구분	내용	비고
응급대응		산업재해 발생 시 현장 응급처치 시행 필요에 따라 119 신고 또는 의료기관 진료 응급처치 및 사후대처 관련 학교 내 협조	
	재해예방조치	### ** ** ** ** ** ** ** ** ** ** ** **	
2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보고	중대(산업)재해 해당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즉시 보고 (전화, 팩스 등) ※관합지방고용노동청에 미보고 서겠보고 시300만원이하고 테로부과 (보고절차, 즉시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내용을 전화,팩스 보고→교육지원청 담당부서 → 본청 학교 안전기획과 (중대재해담당), 본청 직종별 운영담당부서로동시 보고 ① 발생개요 및 피혜상황② 조치 및 전망③ 그 밖의 중요한사항	※적용대상-근로 자노무제공자도 급용역 위탁등) 수급인수급인의 근로자및노무제 공자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재해원인, 발생경위 조사 등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실시	

중대산업재해 사례



사고 개요

• 나무 전지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무게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사고 원인

- 사다리 2인 1조 작업 미실시
- 사다리 미끄럼 방지조치 미실시

재해예방 대책





2인1조로 작업(1만은 사다리를 잡아 줌)

중대산업재해 사례



사고 개요

• 수변전반 교체 작업을 살피기 위해 고압 전기 장비가 설치된 시설물을 점검하다가 감전사고 발생



사고 원인

재해예방 대책

- 담당 근로자 외의 임의 출입
- 충전부 방호조치 미설치





중대산업재해 사례



아동식비개 외축에 설치한 작업발판에서 해제작업 중 이동식비개가 도리되며 추락

공 사 명	OO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보수	발생일시	2011.01.28(급) 17:00분경
재해형태	추락(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명
소재지	전남 화순군 동면	공사규모	다목적강당 천정판별(598㎡

이 7m에서 추락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한 재해임.

에 과하줌(W=120kg)이 발생되어 이동식비계가 전도되며 피재자가 높



- 이동식에 제품 조합하여 사용을 따라 제작하 의대하다는 받는 최소족의 4명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여, 이동식에게를 단독으로 사용 사는 이동식에게가 전도되고 않도록 군고한 시설들이 고현하기나 지지점(이웃로리가)을 설치하는 중 모든에 조직된 하여야 하. 는 이 아이성의 비자를 보려는 중 인도에 조직된 아이야 하. 성이 보다는 구강에 보다 등 하나 전에 가면하게 될 것이 되었다. 전에 보다는 구강에게 기록을 심시하여야 할 것이 되었다. 전에 보지하는 구강제와 기록을 심시하여야 함.



and the second second second



전도된 이동식비계

주요내용 Q&A



Q1 질의: 공립학교장이 학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 학교장이 중대재해 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교육감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 또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려면,
 사업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인력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에 관하여 교육감에 준하는 정도로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 o 다만, 학교장은 교직원의 지도·감독 의무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관리감독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현조
-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질의: 안전보건관리 사항에 대해서 학교(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 o 학교기관)장은 교직원의 지도·감독 의무가 있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개선조치사항, 안전·보건점검,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등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고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3 질의: 공무원은 일부 현업업무종사자를 제외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직인 공무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니다.
- * 공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판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어서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 나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대법원 1998.8, 21, 선고 98, 두9714 판결 등 참조)

-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되,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이나 명시적 배계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국가공무원 등에는 공무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에는 사무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공행정 등의 경우 헌법업무중사자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 중 안전관리자 등 일부 조하오 전요하지 않으니(사어아저부거병 시해려 병표! 차조) 그 있의 조하요 혀어어모

 대한 전요하지 않으니(사어아저부거병 시해려 병표! 차조) 그 있의 조하요 혀어어모

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참조), 그 외의 조항은 현업업무 종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질의: 학교에서 법상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나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므로, 경영책임자인 교육감(공립학교) 또는 이사장(사립학교)이 중대 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다면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고용 노동부에서 판단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은 이행여부에 대한 증거를 요하므로 중요한 의무이행 사항은 문서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 o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묵인하는 것은 위험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o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따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는 1년에 몇 번 실시하고 실시 결과 유해·위험 요인을 발견하였을 시 학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답변)

O5

- o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는 연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재해발생 시 등 수시평가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이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개선 또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 위험성 평가 등을 형식적으로 이행하여 제대로 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산업 재해를 야기하였다면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관한 점검 의무 위반은 물론 법령 상의 다른 의무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은 법령상의 최소한의 점검주기에 국한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수시로 실시하여 실질적인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사소한 모든 재해도 포함되나요?

- o 개발방지 대책 수립 대상 재해는 반드시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경미하고 사소한 재해라도 그것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방치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이는 기존 재해의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 하인리히의 법칙(1:29:300의 법칙)
 -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



질의: 학교에서 매점, 수영장 등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나요?

- o 일반적인 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므로 임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다만, 계약의 형식은 임대차라도 임대인이 실질적으로는 도급인으로서 해당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질의: 학교(기관)에서 도급을 주는 경우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는?

- o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 도급을 주는 경우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급 등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급인 및 수급인의 종사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보호대상입니다.
- o 건설공사발주자의 경우 발주도 민법상 도급의 일종이지만 발주자는 종사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운영을 하는 자가 아닌 주문자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기간동안 해당 공사 또는 시설 장바·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 도급인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